

제429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5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상정된 안건

1.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10시04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융합미디어 시대 속에서 방송과 통신, 플랫폼과 콘텐츠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제도와 조직 그리고 거버넌스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지혜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련 법안심사 시 참고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의 방향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거버넌스 개편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이용자 권익 보호 그리고 미래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여섯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정책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고민수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박동주 국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민수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무슨 공청회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최형두 위원 공청회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고민수 교수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안 줍니까?

○위원장 최민희 공청회에서……

○최형두 위원 2분만 주세요, 2분만. 공청회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미 진행되는 공청회를 무슨 방향을 얘기합니까?

○최형두 위원 아니, 공청회 이 한 번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 한 번 거치고 9월 중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게 지금 일정 아닙니까, 민주당의?

○김현 위원 공청회랑 상관없잖아요. 조금 이따 하세요.

○위원장 최민희 그것 과방위에서 하지요. 그것은 공청회하고 상관없잖아요.

○최형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위원장 최민희 오늘은 공청회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형두 간사께서 하시려는 얘기는 김현 간사님과 두 분이 사전에 협의하시고…… 지난 회의 때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잖아요, 원활하게.

○김현 위원 예.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일정을 두고서 오늘 하루 통과의례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김현 위원 통과의례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진술 듣고 얘기하시지요.

○**최형두 위원** 그래서 국회 전체 특위 차원으로 이 논의를 확대하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김현 위원** 전체 특위가 어디 있어요?

○**최형두 위원** 만들어야 되지요.

○**위원장 최민희** 제가 보기엔 일정을 어떻게 하고 이것은 과방위의 일이고 지금은 공청회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과방위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최민희** 고민수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고민수** 고민수입니다.

제가 작성한 진술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술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들어가는 말’이라는 목차를 하나 빼 놓고 왔는데요. 그 부분을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말은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매번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행정부가 바뀌면, 구성이 되면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게 될까요? 했을 때 우리 헌법과 법치국가 원리에 따르면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직무범위를 정하고 또 행정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로써 그 내용을 정해야 된다고 돼있지요. 그런데 행정부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면 이른바 국정운영 목표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국정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개편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3대 개혁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아마도 그중 하나의 개혁과제를 실현하려다 보니까 행정조직의 개편이 요구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고 그러한 추론이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저는 헌법에서 그 답을 찾아왔는데요. 뭐냐하면 행정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과 국민 신뢰 확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개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본질적으로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방송통신 사무라는 것을 독임제 행정부처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방송통신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일반 독임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왜 합의제 행정기관이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제 정부형태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 특히 방송통신 사무를 다루는 조직은 합의제 행정기관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방송과 통신은 언론의 자유와 깊이 관련이 있고 이른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행정기관 소속의 경우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책적 통제를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에 쉽게 노출된다. 그

래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으로부터 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합의제 행정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그리고 다양성 보호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주장은 밑에 보시다시피 한국 방송행정조직 변화 개관을 통한 증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독임제 정부 시절에 방송이라고 하는 영역이, 방송행정이 어떻게 운영이 돼 왔고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지 또 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통해서 방송행정 그다음에 통신행정 사무 까지 수행하게 하도록 했는지, 그게 6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연표 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요 합의제 행정기관은 이른바 규제업무만을 담당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책권하고 규제권 내지는 규제권과 진흥권 이것은 다른 행정조직에서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거를 많이 주장을, 논리를 많이 펼치셨는데요.

이런 주장이 어디서 이렇게 기반을 둔 건가 살펴봤더니 일단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서 한번 그런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경우 합의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책과 규제 권한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표본이라고 불리며 또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삼권분립 이론을 가장,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그런 국가에서 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합의제기관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은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정책과 규제라는 기능을, 권한을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조정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유 또 방송통신 분야는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로 하여금 복잡한 기술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공성과 시장성 사이의 균형 조절을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합의제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설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엄격한 권리분립에 기초해서 이러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헌법적 해석 관점들을 밑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능주의적, 실용주의적 헌법 해석에 따라서 미 연방대법원이 지금도 합헌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위원 정수의 확대, 구성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건데요. 일단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사무조정이 이번 법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조정에 따라서 위원 중원의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전문성 확보와 정책품질 향상·개선을 위해서 위원 정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른바 다원주의 확대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상임위원 제도를 이번에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이해

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원주의 실현 가능성이 증가된다라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위원 숫자가 늘게 되면 세금 낭비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예상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잠깐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직무에 비해서 위원 수가 부족할 경우 정책 검토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이 경우 위원 정수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큰, 그리고 직접적인 간접적인 비용 발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조정은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7분 드리고 1분 30초 더 드리세요.

○진술인 강명일 지금 이 법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방통위가 했었던 방송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용자 보호 그리고 행정적인 정책 이런 부분의 기능을 이제 유료방송이라든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법안을 만든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지금 하는 유료방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처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규제하고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사전에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K-콘텐츠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부처,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서너 달 이상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과연 우리가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AI와 K-콘텐츠, OTT 서비스 진흥에 방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나라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이 방송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OTT 서비스가 빠졌습니다. OTT 서비스가 빠졌던 부분들은 한미 FTA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다른 부처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OTT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심의도 하고 공정성 심의도 하는 부분들이 맞는지……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K-콘텐츠를 억제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마련된 상황에서 부처에 대한 업무 분장과 거기에 따라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OTT가 빠졌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디지털플랫폼에서의 여러 가지 비디오·오디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심의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국가가 지금의 방송심의 규정과 같은 그런 규정을 갖고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법제도가 과연 정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들은 방송심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송심의 규정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언론사 교육을 받은 기자가 팩트를 취재하고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전제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버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일반인들이 자기 표현의 자유를, 자기가 표현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표현행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현법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자만큼 팩트를 구분하지 못하고 혹은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망치를 휘두르면서 제재를 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 민간기구로서 지금 보면 탄핵심판 소추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고 정무직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무직공무원으로 되는 입법안이 나왔고 탄핵 소추의 대상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기구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동영상이나 짤방, 쇼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심의까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재가 일어났을 때 일반 개인들, 표현행위를 하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상에서의 위축효과 이런 부분들이 심대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이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거의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은 만들면 안 된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현대에 와서 표현의 자유가 다른 법의이랑 충돌이 있을 때 이것을 제한하는 방법은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들만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내용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제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컴펠링 니드(compelling need)가 있는지, 정말 필수 불가결한 니드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우 제한적으로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부기구가 직접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뀐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름으로 정부의 권력을 통해서 이것을 심의하고 제재를 한다는 입장에서 심각한 위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USTR의 OTT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오디오비주얼 서비스라는 상당히 포괄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해서 만약에 제재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규제를 신설했을 경우에 통상 압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어떤 스테이터스 쿼(status quo)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더 신설됐기 때문에 클레임을 걸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인 또는 2인이 결정한 부분들이 과연 합의제 기구에 합당하

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혹은 대통령이 방통위원 추천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둬서라도 강력하게 추천을 국회와 대통령이 하고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그렇게 방통위원들이 임명된 상황에서는 그러면 3인이든 5인이든, 완벽한 5인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법 개정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고려점을 봤을 때 OTT 서비스가 빠지고 또 유료 방송에 대한 관광 논의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법 개정으로도 충분한데 법을 폐지하고 새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칙 제4조에 의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처분적 입장으로 해임하는 부분들은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박동주 정책국장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 박동주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박동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 과방위에서 저희 방통위 사무처장전담대리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전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거버넌스는 13년도에 마련된 체제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을지라도 미디어 관련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3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유료방송·방송진흥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부 전체 차원의 통합적인 미디어정책 구현에 어려움이 있어 미디어 통합기구로의 개편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십여 년간 방송·미디어 분야의 거버넌스 분리로 방송정책의 일관성 있는 시행이 곤란하였으며 사업자들이 이중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하려면 과기정통부의 허가와 방통위의 동의를 이중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통합된 미디어법 제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OTT로 촉발된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산업 내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디어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등의

새 정부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방통위는 지난 3년 동안 2인 또는 1인 체제로 운영되어 방통위의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방심위 또한 9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면 새 정부의 주요 공약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조직 설계 시 미디어 분야의 양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산업적 성격을 고려한 진흥과 미디어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개된 의사결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합의체 방식의 위원회 형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통위는 현재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이용자 보호정책을 수행하는 유일한 전문 부처로서 향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거버넌스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정법에 따르면 OTT를 제외한 방송 분야의 진흥·규제를 방통위로 일원화하지만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로 이관되는 업무 범위를 향후 타 법 개정 및 시행령인 직제에 명확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 관련 기술진흥이라든가 방송 분야의 기업 지원, 방송인력 양성 관련 업무와 방송사 수요, 무선국 허가·검사, 방송 수신장애 조사 등의 지역사무소 업무의 미세한 조정도 향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방송 3법 통과와 관련한 후속작업에도 조속히 처리하여 변화된 환경에서 미디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에 맞는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는 국회의 논의 결과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붙이면 방통위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지 12~13년이 되었습니다. 방통위는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항상 좌절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논의가 좀 잘 이루어져서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변호사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진욱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그간 방송 미디어 그리고 통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가 10여 년 이상 계속돼 왔고 특정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늦어다든지 그런 정파적 당락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의 경우에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와 공공성, 효율성 확보 가치 실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함으로써 개편 논의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수호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방송·통신·인터넷 정책 분야를 규제와 진흥 부분으로 이원화해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 측면에서 또 규제 측면에서 민간 영역 규제의 어떤 신뢰 그리고 예측가능성 측면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발의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거버넌스를 단일화·통합해서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가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그리고 동시에 공공성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편 시에 이러한 헌법 가치와 법률적 안정성·투명성을 철저히 담보하면서도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혁신 성장 측면도 균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버넌스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 그리고 특히 정무직 임명 시에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버넌스 개편 시에 특히 공공미디어 영역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률적 안전장치가 함께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에 있어서 권한 배분과 조직 운영의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을 일원화하면서, 집중하면서 서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균형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 배분이 불명확하거나 미흡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든지 권한 남용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공미디어와 민간미디어의 규율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간미디어의 경우에는 자율성과 창의성,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미디어의 경우에는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방송·통신·미디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처해져 있는 현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외의 규제나 어떤 규율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겠지만 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기준 그리고 헌법 해석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청회도 열리고 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 참여와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와 투명한 절차 진행을 통한 사회적 합

의가 마련된다면 이번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논의 과정에서 산업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공공성, 정치적 독립성에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급변하는 ICT 환경 그리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의 혁신성장도 이번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산업 진흥 요소가 배제 내지는 간과될 경우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글로벌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방송·미디어 규제 혁신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 심화 국면에서 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 확대라든지 경쟁 촉진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시 함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면 거버넌스 구성 절차에 있어서 객관적 평가 기준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그리고 많은 일자리와 산업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영역에서의 최소화된 또 유연화된 규율을 통한 산업 혁신과 진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미희 처장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 신미희 신미희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시청자 주권 그리고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애써 주신 과방위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정상화를 위해 빨빠르게 거버넌스 개편에 대응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직개편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장악의 수단으로 전락하다시피 한 방통위와 방심위가 방송·통신·미디어의 독립성 보장과 공적 책임, 공공성 실현과 공공성 보장, 경쟁력 향상, 이용자 편의 증진 등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법제 개편 등의 조치는 국회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에서도 잇따라 위법이라 판단한 대통령 지명 위원만으로 편파적으로 구성하여 1인 체제, 2인 체제를 반복하는 등 과행적 운영으로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이른바 위법적 2인 체제 의결의 배경이 되었고 이를 주도한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잇따라 탄핵되어 방통위 비정상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 역시 대통령 지명 위원만으로 위촉돼 편파·정치·표적 심의 등 논란 속에 공정성 시비를 지속적으로 일으켰으며 류희림 전 위원장의 경우 방송 사상 초유의 불법적 민원 사주 사건으로 방송심의제도 근간과 방심위 위상마저 무너뜨리며 방심위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 3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공영방송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방통위 규칙 제정이 필수적인데 방통위원회 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현행 1인 체제에서는 사실상 규칙 제정이 불가하므로 방통위 개편은 더욱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1인 체제 방통위, 2인 체제 방심위는 일상 업무 수행조차 불가할 정도의 식물화된 조직입니다. 이로써는 기능 복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조직 위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제 개편은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합의제 원칙, 독립성·자율성 보장 원칙, 방송·통신·미디어의 통합적 관리 감독 기능을 분명히 하여 방통위·방심위 1차 개편을 서두르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된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등과 같은 사회적 협의기구의 논의 그리고 국민 공론화를 거쳐 향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과 보완 입법을 2차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독립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통합적 진흥·규제 기관으로서의 방통위를 확대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는 방통위, 과기부, 문체부 등 여러 부처로 산재된 방송·통신·OTT·플랫폼 등에 관한 진흥정책과 규제 기능을 통합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성, 공공성에 기반한 합의제 중앙행정 기구로서 그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미디어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역을 포함했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과 달리 수정 법안에서 OTT 영역이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쉬우며 향후 통합 미디어법 제정과 미디어 통합기구 개편 등을 위한 차기 입법 과정에서 규제와 진흥의 통합뿐 아니라 미디어 영역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되어 온 기존 방통위의 정파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 수를 7인 이상으로 증원하여 합의제 기구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개편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거대 양당의 대리 정쟁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확대된 위원 규모에 맞게 방통위원 추천 권한을 다양화하고 그 비율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위원 결격 사유를 방통위원 결격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임원과 동일하게 정당원 관련해서는 3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경과를 적용하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 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결격사유에 반드시 포함해

서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통위, 방심위 과행 운영의 원인이 된 기형적 2인 체제, 3인 체제 등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대안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을 특정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이른바 행정부작위로 인한 무력화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내 자동 임명되도록 하여 편파성 구성을 막는 방식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심위의 독립성 강화와 위원장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직개편 방향에도 동의를 하며 방심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여 전횡을 제어할 수 있게 하고 인사청문회 및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방심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게 하여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방심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과 같이 방심위원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하거나 중립지대에 추천 권한을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청드립니다.

방심위의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정치 심의에 악용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논평의 공정성 심의에 대해서는 특별다수제를 적용하거나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 처분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심위원으로만 구성되는 방송·통신·광고 등 소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대체하여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교수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이인호입니다.

이번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서 간단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크게는 두 가지 변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청각미디어라고 하는 뉴미디어를 방송에 포함시켜서 규율·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큰 변화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라고 하는 통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한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송 규제의 논리를 인터넷의 시청각미디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언론매체와 시청각미디어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미디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일찍이 2002년에 인터넷에 대해서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서 방송의 규제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방송을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방송이라는 언론매체가 가진 특수성 때문입니다. 잘 아십니다마는 한정된 소수의 방

송사업자가 사회 내 정보 유통 과정에서 이른바 정보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경우에 견해의 다양성을 가로막아서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용인되고 소유 제한을 두며 또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가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고 또 공영방송사나 민영방송사에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그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어서 그 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 규제의 헌법적 논리를 인터넷의 시청각미디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글로벌 기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헌법 위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칫 통상 마찰의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이 점이 깊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논점은 국회는 방송규제기관, 그러니까 새롭게 신설되는 위원회든 지금의 위원회든 구성을 할 때 국회가 추천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과 법률은 대통령과 국회가 인사권을 나누어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또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 갖습니다. 위원 추천권이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국회가 가질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행정권과 중앙행정기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승인함으로써 그 기관에게 국회가 가진 민주적 정당성을 보태어 줄 수는 있지만 직접 특정인을 추천해서 반드시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파적으로 나눠 먹기식의 조직 구성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적 책임성을 묻기 위한 국회의 개입은 간접적 통제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추천과 같은 직접적인 개입은 입법기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특히 구속력 있는 인사 추천은 위헌성이 매우 짙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방송 규제기관의 구성을 놓고 격렬한 정파적 갈등과 대립을 벌여 온 제도적 원인은 이런 정파적 나눠 먹기식 구성 방식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임명된 위원은 그 정파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그 활동과 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파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은 설계에서부터 실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권의 교체에 상관없이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가중 다수에 의해서, 5분의 3이든 아니면 3분의 2든 가중 다수에 의해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이 되고 국회 내 소수자 보호의 원칙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저는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논점은 독립 규제기관을 폐기·신설하더라도 기존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방송통신위원은 독립 규제기관의 위원으로서 3년의 임기가 현행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거의 동일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새로운 독립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법률에서 그 부칙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헌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 가지 논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는 특정인에 대한 해임 권한을 국회가 입법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해임권을 행사한 것으로 행정권과 사법권을 침탈하는 겁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을 정립하는 권한인 것이지, 특정인을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권과 사법권의 고유 영역입니다. 따라서 법률안 부칙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권력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독립기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는 핵심 장치입니다. 법률의 제·개정으로 그 임기를 중도에 박탈할 수 있다면 국회의 다수 정파가 정치적 이유로 독립기관을 언제든지 재편할 수 있게 되어서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정치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서 헌법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은 지금 현재 공무담임권적 지위를 형성합니다. 이를 입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의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상의 헌법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요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의 박 위원님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먼저 하게 된 까닭은 박충권 위원님도 징후가 있어서 병원 다녀오는 바람에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 공청회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오늘 몇몇 진술인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보자면 효과는 딱 하나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에 의해서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 관장 정부의 편제를 재편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실제로 방송·미디어·통신 진흥과 규제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짹을 트었던 K-pop, K-드라마, K-컬처의 과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대박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OTT가

고스란히 수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미디어로 육성·장려할 것이냐 또 어떻게 규제를 바꿀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가 한 차례의 공청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범정부에서도 총리실 산하의 특별 검토기구, 그다음에 종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또 인터넷기업협회, 국내외 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인호 교수 등이 제시했듯이 통상 마찰 요인으로 국회가 뜻밖의 암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방송통신 융합 통합 정부기구 구성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를 두고 심사숙고한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국회 역시도 문체위, 정무위 같은 여러 상임위의 소관 의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전례에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 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희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우리 당 원내 지도부에게 여당 원내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이 문제를 국회 의제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회장을 교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입법을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어서 나중에 위헌결정을 자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을 국제적으로 우뚝 세울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권한을 나눠 가지고 규제 환경을 나눠 가져서, 조각조각 나누어서 규제권을 행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역시도 상임위별 과편적 논의가 아니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AI 기본법 만들 때 문체위에서 뜻밖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논의가 상당히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고, 지난 2006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구성되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문을 쭉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다른 갈래의 법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와 같은 체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홍 정책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일원화된 체제, 즉 미국의 FCC라든가 일본의 총무성 산하 체제가 있겠고 또 유럽의 영국·프랑스·호주 이런 나라들처럼 두 개의 기능을, 규제와 진홍 정책을 부처와 위원회 체제로 나눠서 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다른 갈래의 논의가 있는데 한 논의만으로 압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청회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제 발언시간 기회에 이야기합니다.

잠깐 저는 이인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이 법안 논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할 수 있고 과거 2006년 노무현 정부 사례 때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 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 때처럼 범정부적 논의를 해 보자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소위에서 우리 당 위원은 사

실은 불참한 채, 거부했습니다. 저 혼자만 기록을 위해서 참여했는데 법안 논의 자체가 48분 만에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정법안입니다. 기존의 체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했던 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했는데, 지금 방송 규제를 OTT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통상 마찰 요인까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좀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이인호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OTT를 비롯한 시청각미디어는 방송 규제와 동일한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출판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인 방송, 그러니까 원래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규제 논의를 했던 것이 지금은 확장돼서 케이블 방송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인터넷에 의해서 오고 가는 미디어 영상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나의 규제의 틀 안에 넣어서 규율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하고도 서로의 영상들을 교환해야 될 텐데 상당한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여섯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시고 진단도 다르고 해법도 다를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말씀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의 방통위와 방심위,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장악을 위한 침병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여섯 분 모두 동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신미희 치장님이 말씀했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현재에서도 저건 문제가 있다. 한 두 명이 모여 가지고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구성하고 마음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괴한 파우치 사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심위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청부 민원, 들어나 보셨습니까? 민원 사주,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미디어환경에 맞춰서도 그렇고 방송 미디어 통신의 거버넌스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방송 3법 개정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렸듯이 이제는 더 이상 정권에 의해서 방통위가 장악돼 방송을 장악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민수 교수님 하나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때문에 거버넌스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진단 하시면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법 개편하고 더불어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단기·중장기적 대책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들려 주십시오.

○진술인 고민수 단기는 지금 논의하는 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 초단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라고 하면 앞서서 박동주 국장이 발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방송법이 아니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8월에 EU에서 EMFA법이라고 하는, EMFA라는 법률이 제정이 돼서 회원국에서 다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뭐를 담고 있느냐면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방송 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되도록 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방송과 통신의 명확한 구분 방법이 시대착오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빨리 방송통신의 명확한 구분보다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산업 간에도 이견이 심각하고요 또 정부 부처 간에도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중기 정도로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교수님. 장기는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여쭤 볼 게 있어서요.

신미희 처장님, 방통위와 방심위 독립성 강화 말씀하시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구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민간 영역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신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술인 신미희 이번 개편안에 유료방송, 무료방송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거버넌스 개편에 있어서 그동안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구분해온 또 구분하자는 그런 주장보다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진통정책 그리고 규제정책에서도 통합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법제와 제도를 마련해서 하는 거는 시장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 방향이 가장 중요하고 경쟁력 역시 미디어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 위원 처장님, 그리고 방심위 독립성·공정성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 3인을 정무직으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좀 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3인이 아닌 심의위원장 한 명, 1인에 대한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진술인 신미희 상임위원 3인에 대한 정무직 또는 위원장직에 대한 정무직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직 한 명에 대한 정무직화만으로도 민주적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박동주 국장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이용자 보호정책을 수행하는 유일한 전문 부처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보호와 관련돼서 거버넌스 보완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 이용자 보호정책의 미흡한 부분이 뭐고 좀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박동주 13년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기능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어진 국을 뜯어내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보면 어느 통신사를 쓰게 되고 플랫폼은 어디를 쓰게 되고 콘텐츠는 어디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과기부에서는 지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 규제를 하고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 보호는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향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 포항남·울릉의 이상휘입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진술 의견을 쭉 듣고 생각이 참 많은데요.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인가요, 노벨경제학상 받은 분이 쓰신 책이 있지요. 이인호 교수님, 그렇지요?

‘법, 입법 그리고 자유’ 거기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법은 누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영향을 받지 못할 정도로 눈치를 못 채게 만들어야 되는 게 법이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술인 이인호 예.

○이상휘 위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궁극적으로 법을 만들 때 그 법의 혜택을 받거나 또는 그런 처벌 받는 대상이 누구일지 알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제정안을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누구에게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 누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이냐, 그다음에 속의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쳤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 법을 이렇게 빨리 서두른 이유가 뭐냐, 이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진술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청각위원회 설치 이 법은 다름 아니라 방통위 폐지법입니다. 이거 이진숙 추방법이에요. 다름 아닙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부칙 4조에.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독립 규제기관을 신설해도 임기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세 번째 조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방통위 폐지법이다, 다름 아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존하는 방통위에 이 기능을 첨가시키면 되는 거지요.

법이라는 것은 배가 항해를 할 때 출렁거리면서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파고를 넘고 그러면서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선하고 개정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걸 다 없애겠다. 더군다나 정무직공무원을, 방통위원장은 사표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법, 이 법에 대해서 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느냐, 숙의 기간을 거쳤느냐. 대부분 숙의 기간 거칩니다. 정말 숙성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법 86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국무총리는 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돼 있지요.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 책임과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정부조직법 만들 때 국회에서 입법하고 그 후에 정부에서 재논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숙의에 대한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신설이 되고 부처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 신설되는 부처가 어떤 국민에게 영향이 갈 것이며 특정인들에게 어떠한 유리한 점을 줄 수 있는 것이며 이걸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만들기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숙의 절차를, 어느 정도 논의를 거쳤는가 우리가 되짚어 봐야지요.

제 기억에 최민희 위원장님이 4월 달에 이야기하신 것 같고 김현 간사님이 아마 7월 달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신설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다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부처를 하나 폐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 하나를 폐지하는데 이런 숙의 기간 없이 공청회 통과하고 9월 달에 법 통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 과학적으로 분석 다 됐는가요? 이런 영향분석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내란적 입법이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영상자료를 보며)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업계 이야기 들어 봐야지요. 방송사 이야기도 들어 봐야 되는 것이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따져 봐야지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하느냐? 이게 빤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방송 3법 통과시키고 여기 규칙 제정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방송 3법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새로운 부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방송 3법 랜딩시키기에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서, 방송의 공공성·자율성·독립성을 위해서 방송개혁 해야 된다. 방송개혁에 여야 막론하고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요.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를 만에 탄핵됐지요. 그리고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도 스물아홉 번이나 탄핵당했습니다. 이게 두꺼비 등 두드려 가지고, 등 찔러서 독 뽑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미필적고의라는 겁니다.

여기에 왜 공공성을 가지고 방송개혁을 이야기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야지요.

이인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위헌적 논란에 대

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인호**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입법 의도라면 위헌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법이라고 하는 건 법을 정립하는 기능인데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겨냥해서 규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요.

230년 전 미국 연방헌법에 이미 그 법리가 헌법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때 입법의 의미는 행정권, 사법권과 나누었기 때문에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은 행정작용이거나 사법작용입니다.

○**이상희 위원** 이 법의 개정 실시로, 제정 실시를 하게 되면 피해 볼 수 있는 특정인이 분명하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민수 교수님, 제가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조직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 헌법에 대한 정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투명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 이런 것들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신미희 사무처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본질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이 얼마나 방통위를 망쳐 놓았습니까. 저는 이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것에 매우 긴급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님은 지금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사무처장이십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이 어떻게 망쳐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신미희**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공영방송은 파괴됐다라고 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는 아직도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기능과 역할이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파우치 박장범 사장 이야기도 했지만 박장범 사장은 현재 공영방송 KBS 감사의 독립성마저 훼손할 정도로 내부에서 사내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KBS 공영방송이 시청자의 공익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을 해서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위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범원의 판단으로 무산이 됐지만 그 후에도 표적 심의를 통해서 MBC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감행을 했었고요.

현재 보도전문채널 YTN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졸속 심사와 여러 편법으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해서 현재 사영화가 된 상태입니다. 사영화 이후에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공성과 공영성은 크게 후퇴를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내란 정국 기간에 YTN은 시민들로부터 내란세력 받아쓰기 1위의 언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보도전문채널의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복원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맞습니다.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파생된 언론탄압, 사실상 윤석열 정권

독재체제를 만들고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맙그림이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이 창조해 낸 방송장악용 KBS이사회가 KBS를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윤석열·김건희의 방송으로 몰락시켰고 그리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에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청탁설, 그리고 6000만 원짜리 목걸이, 금거북이로 사고판 국가교육위원장직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후원사, 명태군 공천 개입까지 김건희가 부패로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는 동안 KBS는 오히려 조그마한 파우치라면서 김건희를 옹호하기에 바빴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명태군 통화 공개, 다른 방송사들 모두 톱뉴스로 다뤘을 때 KBS만 나홀로 여덟 번째 꼽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9월 5일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군 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9월 30일까지 26일간 KBS는 보도 건수 1.5건, 전체 평균이 12.9건, 하물며 TV조선과 채널A까지 10건이 넘게 보도할 때 이런 짓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 방송 KBS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진 이유, 방통위의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일상 업무 수행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더 위중한 사태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산파한 김건희의 방송 KBS가 내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한덕수의 공소장 한번 보시면, 공소장에 명시된 사안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면)

12월 3일 20시 40분경 한덕수는 대통령실에 도착해 먼저 와 있던 통일부장관 김영호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말하고 20시 45분경 윤석열,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안부장관 이상민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안으로 함께 들어가고 20시 56분경 뒤를 이어 들어온 외교부장관 조태열이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네받고 난 후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KBS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즉 국무총리부터 외교부장관까지 최소 5명이 KBS가 내란 선포 생방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 사안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쳐서 지난 12월 13일 최재현 통합뉴스룸 국장을 중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뉴스와 보도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불출석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낮부끄러울 정도의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KBS가 내란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지금 현재 파다하지 않습니까?

○진술인 신미희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S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시민들도 KBS가 그 당시 내란,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전 인지를 하고 계엄선포 방송을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해당 내용이 공소장으로 직접적으로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례 아닙니까? 국민의 방송 KBS가,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을 발표해서 방송의 자유를 철저하게 유린할 생각이었다면, 그리고 윤석열의 거대 망상을 생방송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KBS가 망가진 이유는 방통위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그것은 시민이 공영방송 사장 추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의 입을 통해 KBS가 내란 선동의 죄를 저지르고 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최재현 보도국장이 중인 불출석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에 대한 고발이 저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료로서 KBS의 내란 부역 행위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만큼 책임자들을 반드시 중인 채택을 해서 법적인 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그것이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김장겸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과 앞서 질의하신 여당 위원들께서 언론의 공공성·공정성, 방송의 독립성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법안을 살펴보면, 지금 질의하는 것도 보면 결국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을 뒷받침해서 KBS 사장과 YTN 사장, 연합뉴스TV 사장을 빨리 방통위 규칙으로,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유리한 규칙으로 만들어서 빨리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면 지난번 소위원회에 제가 못 들어갔는데 언론보도 등을 보면 최민희 의원안이 위원 9명 그리고 김현 의원안이 5명으로 위원 수가 됐는데 중간 7명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7명으로 되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빨리 하여간 절충해서 하자……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 그 소위 때 언론보도를 보면 그 부칙 위헌성을, 우리 이인호 교수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부칙을 보면 이진숙 찍어 내기가 명백한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그렇지 않다…… 속기록을 보면, 백브리핑이군요. 2006년도에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그때 당시 임기가 2009년이었는데, 김현 위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임기가 종료됐고 새롭게 방통위원회로 제정해서 그 법에 따라서 구성했다, 그래서 신법 우선이고요, 그래서 이진숙 임기 단축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 전문위원을 지낸 분의 문건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당시에 방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고 단순한 민간기관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의 특별법에 의하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소위 방통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인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진술인 이인호 방송위원회는 민간기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장겸 위원 그렇습니까?

○진술인 이인호 민간기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하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때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위현성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 이런 거를 주장하려면 지금 방통위법에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보장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박동주 국장님, 13년 전에 조직 필요성이 있었고 공감대가 있고 13년 된 거다, 그리고 기능적인 개편이 없었다, 국을 뜯어 내는 정도로 그 당시에 있었다,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방통위가 기존 14개 소관 사무에 네 가지 정도 사무를 추가했고 심의 대상을 29개에서 32개 정도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위에서 OTT는 소관 사무를 뺏단 말이에요. 이게 급변하는 환경 운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방송미디어 법제체계 추진 방향에 관해서 방통위에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방송과 OTT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시청각미디어로 묶는 통합 미디어법 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이게 김현 의원 법안하고 상당히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 OTT 빼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기능적인 개편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맞습니까? 부합합니까, 박 국장님?

○진술인 박동주 아직 OTT 부분은 부처 간 이견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양만 바꾼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렇게 지금 근본적인 속의 없이, 근본적인 개편 논의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 몇 개 뜯어내고 붙이고 하는 수준으로 다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술인 박동주 저희 사무처에서 김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은 유료방송을 일원화하거나 방송·통신·OTT·디지털콘텐츠·시청각미디어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일원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OTT 빼지고 뭐 빼지고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 법안으로 돼 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진술인 박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장님은 임기 조항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장겸 위원 고민수 교수님, 지금 방송 독립, 공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기구란 말씀이지요? 이거를 지금 탄핵할 수 있다, 그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화하려고 하는 건데 국가가 결국은 검열을 하겠다는, 그러면 방송 독립, 소위 미디어 독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고민수 답변드릴까요?

○김장겸 위원 예.

○진술인 고민수 의견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아니지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일단 검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열은 사

전적 행위여야 검열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후적 행위기 때문에 검열이라는 표현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이신 방심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바꾸는 거는 국가가 관여하는 것 아니냐, 내용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 방송위원회가 딱 그랬습니다. 과거 방송위원회가요 방송행정 권한도 갖고 있었고요 인허가 권한도 갖고 있었고요 내용에 대해서 이른바 내용 규제지요, 사후적 내용 규제 권한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방송위 시절에 여러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헌 판단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어요.

더 하실 거예요? 추가질의를……

○김장겸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러면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랜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는데 그 성격 규정에 100% 동의합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은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겠지만 지금 현재의 방통위 체제는 허물고 새롭게 구축해서 역할을 제대로 다할 수 있도록 새롭게 랜딩이라는 표현 동의합니다.

또 앞서서 지금의 논의가 마치 급조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앞선 우리 진술자들을 통한 증언에서도 나왔듯이 이 논의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본인이 참여 안 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존재했던 논의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2013년도 박근혜정부가 무리하게 IPTV 등 유료방송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생긴 비정상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은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졌고요 그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있었던 노력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관심을 갖고 있던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랬던 거예요. 법안 발의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의들, 노력들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존재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연장선에서 이사안이 다뤄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정부 차원의 부처 정책 조정 노력, 이것은 어느 정부나 다 이루어집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출돼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관심이 없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감, 의견 축소 이런 과정들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위원회의 위원 숫자, 5명 안이 제시되고 9명 안이 제시돼서 중간 7명으로 절충했다라는 그런 인식은 그동안의 고민과 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런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고민했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명 제안, 제가 고민 끝에 한 사람입니다. 소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다. 5 플러스 9 나누기 2가 아닙니다. 남는 것은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 이런 설계들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크게는 이 IPTV로 대표되는 유료방송의 규모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료방송 정책을 어디서 담당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방송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던 그 시점, 그 바로 직전의 IPTV 가입자 수는 지금의 반토막도 아니고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3개 IPTV 통신사 합산으로 하면 500만이 좀 넘었고요 중복 빼면 40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2000만 돌파가 20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00만이 넘어요, 중복 빼고. 연인원으로 하면 2600만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2013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 당시에는 지방에 아예 IPTV가 안 깔리고 수도권에도 빈 데가 많았고 전국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송 플랫폼이 이렇게 커져 있는데 2000만 명 넘는 가입자 수, 그러니까 인원으로 하자면 훨씬 더 많은 거지요, 가구 개념이니까.

그 덩어리가, 일부가 아니라 덩어리가 방통위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진숙 한 명 쫓아내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문제인 정부 때는 ‘몇 년 뒤에 이진숙이라는 자가 나타날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난센스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아웃은 이러한 긴 흐름 속에서 필요한 정책 논의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을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박정훈입니다.

지금 김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소위 차원에서 논의를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세 차례나 병합심사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묵살했어요. 그리고 이정현 위원도 그것 병합심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묵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 대해서만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현 소위원회가 자기 당 위원들에 대해서도 독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의견을 용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쫓아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법안에서 지금 현재 정무직공무원의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진숙 쫓아내기 법안이 아닌 거예요.

이인호 교수님, 지금 한 명을 쫓아내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셨지요?

○진술인 이인호 예.

○박정훈 위원 이것을 위헌으로 보시는 근거가 뭡니까?

○진술인 이인호 말씀했던 대로 법률로서 특정인을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 이게 공정한 안이고 오랫동안 준비한 안이고 그렇다면 그 조항만 빼면 됩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안이 위원 5인으로 하는 거고 최민희 위원장 안이 9인인데 그거를 노종면 위원이 7인으로 자기가 중재안을 냈다? 아니, 7인으로 중재하는 것을 소위에서 그냥 얘기해서 확 바꿉니까, 충분히 논의도 안 하고? 5인, 9인을 제안했을 때는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5인이 필요한 이유, 9인이 필요한 이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중재해 가지고 7인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게 독재지 뭐예요.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됐고 논의가 됐어요? 그냥 7인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중재했으니까?

오늘 한 언론사 칼럼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국보위를 연상시킨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공 때 국보위. 입법·행정·사법 모든 걸 장악해서 멋대로 하는 국보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이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이 과방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현 위원이 소위에서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게 다 민주주의 무시하고 5공 때 국보위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딸들한테만 잘 보이겠다는 법안이에요. 이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면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개딸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다. 예전에 조선일보가 삼성의 나라라는 그런 칼럼을 써서 삼성이 우리나라에 뻗어 나가는 그 권력을 견제한 적이 있어요. 지금 개딸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들어 보면. 그런데 개딸들한테만 오로지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49%로 당선 됐어요. 우리 국민의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국정 운영을 해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개딸에게만 잘 보이겠다는 민주당의 일부 빼뚤어진 의원들 때문에 오늘 이런 법안들이 이런 공청회까지 거치면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을 무시해도 좋다, 우리 당이 뭐 내란당이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계엄이 있던 당일에 저희가 가장 먼저, 저희 당 대표가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했고요. 저도 그리고 우리 당의 다수 의원들이 가서 계엄 반대 투표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뭐 했는지 아시지요? 숲에서 한 시간 동안 숨어 있었어요, 계엄군한테 잡힐까 봐. 본인 입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웃어 가면서. 그런 사람이 무슨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 표결 방해했다. 우리가 무슨 표결 방해했는데요? 무슨 증거 있어요? 특검 만들어서 두 달 동안 탈탈 털었는데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우리 당이 내란에 연루됐다는 무슨 증거 하나 있어요? 정황이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당을 이렇게 무시하면 민주당이 역풍 맞아요. 이렇게 민주주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삼권분립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판사까지 자기네들이 선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 그냥 묵과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당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목소리 자신 있게 못 내고 있지만 민주당 나중에 심판 받아요. 어떻게 한 명을 찍어내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 조항 없애면 돼요. 그러면 그런 오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면직시키세요,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면직 권한이 있잖아요. 면직시키면 국민들이 그거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마치 합법적인 양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낸다? 이런 우리나라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할 거고요 그렇게 기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딸의 나라, 우리나라가 진짜 개딸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서 우리나라가 망가질지 정말 걱정됩니다.

오늘 진술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 주셨고 그중에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는 이게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막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가 국회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공청회는 했지만 우리 법이 아직까지, 추후에도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좀 더 보시고 신중하게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신상발언하십시오. 5분 드리세요.

○**김현 위원** 지금 박정훈 위원께서……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 자리는 공청회 자리입니다. 국회가 정파적으로 나누어져서 위원들은 늘 정치 투쟁을 하고 요즘은 유튜브 쇼츠가 유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진술인들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폄훼하는 건 공청회에서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의견을 물어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김현 간사님 5분 드리세요.

○**김현 위원** 세상을 아무리 흑이 백이 되고 백이 흑이 되더라도 역사의 진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정훈 위원이 제가 낸 법안을 비난하면서 독재를 운운하고 국보위를 얘기를 했는데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무엇인지 알고 발언했는지 역사의 물이해와 물상식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고 분노를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두환의 후예 정당은 민정당, 민자당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5·18 광주민주항쟁을 통해서 무고한 국민을 죽인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가 만든 것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누가 활동을 했는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친인척이나 저와 피 한 방울도 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감히 독재를 운운하고,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평민당에 입당해서 40년 가까이 민주주의와 인권과 통일과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방송개혁을 위해서 헌신해 온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인 저를 향해서 독재를 운운하는 박정훈 위원에 대해서 저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박정훈 위원** 이게 독재라고요, 이게.

○**김현 위원** 조용히 하고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님 끼어드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계속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그리고 법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법을 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법을 내지 않고 있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우롱하고 조롱하면 그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합니까?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택해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평등·비밀·직접선거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낸 것입니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대통령이 15일 후에 공표하면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거부하면 다시 재의권을 발휘하면 또 국회에서 표결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일각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논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잡을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민간기구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행정기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방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민간 독립기구의 위원장을 국가직,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이다,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은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행정실에서 구체적으로 내용까지는 설명을 안 해 주고 진술인들에게 참석만 할 것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공청회가 될 때는 저희가 진행되는 내용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이 있잖아요, 2개의 법안이 있고 1개 법안은 아직 상정이 안 돼서 김현 간사께서 소위에서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김현 간사 권한이 아니에요. 1개 그……

○김현 위원 아, 제 얘기세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법안들은 다 진술인들에게 보내 주셨나요?

○김현 위원 그것도 안 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진술인들한테 법안을 보내 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이 이미 공지되어 있고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진술인들은 충분히 그것을 보고 협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 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좀 더 성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최민희 혹시 진술인들께서, 지금 관련된 법안이 3개가 발의돼 있고 상정된 게 2개 법안이에요. 1개 법안은 아직 상정이 안 되어서 소위에서는 논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법안은, 혹시 읽어 보시고 오셨을까요?

○진술인 이인호 예,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전달을 받았어요?

○진술인 이인호 예, 요청한 데서 받았고요.

○위원장 최민희 아, 국민의힘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진술인 이인호 예, 회의록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혹시 지금 그 법안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요?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아니, 저도 사실 약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논의 진전 과정이나 법안의 내용을 못 받

으셨나 이런 대목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으로 진술해 주신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질문을 통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실에서 좀 더 꼼꼼하게 쟁기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진술인에 대한 비판 취지는 조금 삼가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기는 하셨는데요. 제가 진술인분들의 진술을 보면서 좀 의문이 있고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이인호 진술인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인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취지, 결국 국회의 위원 추천권이 행정부 인사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으로 그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시지요?

○**진술인 이인호** 예.

○**이주희 위원** 그리고 워딩을 그대로 보면 ‘민주적 책임성을 둔기 위한 국회의 개입은 간접통제에 머물러야 하고 인사 추천과 같은 직접적 개입은 입법기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구속력 있는 인사 추천의 위헌성이 매우 짙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헌법 제78조 언급하셨어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여기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진술인 이인호** 예.

○**이주희 위원** 그러면서 또 제정 발의안뿐만이 아니라 현행 방통위법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주장 읽으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겠는데요.

진술인, 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판결문 보셨을까요?

○**진술인 이인호** 예.

○**이주희 위원** 그 판결문을 보셨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통위법은 대통령 지명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 여권 추천 위원과 야권 추천 위원이 모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방통위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여권과 야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중첩적으로 구현하였다. 이 판시 사항에 동의하시나요?

○**진술인 이인호**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주희 위원**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현행 헌법과 법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하니까요.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어느 조문에 있습니까?

○**진술인 이인호** 헌법 조항에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헌법 제86조 1항입니다.

○**진술인 이인호** 예.

○**이주희 위원** 그리고 같은 헌법 제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진술인 이인호** 예.

○**이주희 위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법…… 이것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입니다, 지금 진술인이 비판하신.

헌법재판소법 제6조 1항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진술인 이인호 헌법에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헌법재판소법에도 있습니다. 제6조 2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감사원법 볼까요?

감사원 원장 선출·임명 방식 감사원법에 있습니다. 제4조 1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114조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모두 다 아까 말씀하셨던 헌법 78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나 선출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서 임명하는 공무원들 맞지요? 그리고 이 조문들에서 국회의 동의나 선출 절차가 없으면 이분들 임명할 수 있습니까?

○진술인 이인호 없습니다.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인호 진술인이 진술서 또 지금 여기 나와서 진술하신 주장대로라면 이 모든 헌법 규정과 법률 모두 위헌이라는 취지거든요.

○진술인 이인호 아닙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 취지 아니시지요?

○진술인 이인호 예.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그 주장 유지하시면 헌법 조문 간에도 충돌이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술인 이인호 아닙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 주장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술인 이인호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희 위원 그래서 그 구분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또다시 의견을 얘기해 주시되, 일단 지금 저희 방통위법에 국회 추천 뜻을 둔다고 위헌을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고위공직자 임명하는 모든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심지어 지금 발의된 제정안은 말씀하셨던 그 국회 추천 뜻의 비율을 훨씬 감축했다는 점 다시 상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이인호 답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최민희 예, 답변하십시오.

○진술인 이인호 감사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열거하셨던 헌법은 헌법기관을 구성할 때의 기본적인 조직 원리를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헌법기관의 구성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과 국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 그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법에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조직 구성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 헌법의 조직 구성 원리에 맞추어서 법률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방통위법이나 법률 개정안도 헌법의 원리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민주적 정당성이 보태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정파끼리 정파별로만 정파적 정당성만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추천권을 하라고. 그러면 각 정파의 정당성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임명된 위원은 정파가 임명한 사람이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형식은 그렇지요, 형식은.

○위원장 최민희 이 부분은, 이것은 정파적인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주희 위원님께 조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되게 유익한 토론 같아요, 여야와 상관없는.

○이주희 위원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최민희 예, 하세요.

○이주희 위원 지금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정법률안, 제정안 그리고 심지어 현행 방통위법 해당 임명 조문 어디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진술인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 우리 현행 헌법과 법률, 심지어는 헌법과 헌법 간의 체계 조화적 해석에서 제가 보기엔 진술인께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작성하신 이 부분이 좀 위배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건전한 의견을 다시 한번 주셨으면, 재고해서 다시 한번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지금 제정법률안의 그 문구를, 조금 이따가 제공이 되겠지요? 위원장님께서 제공해 주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따로라도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이인호 예.

○이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이주희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에.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저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으로 바꿨어요, 이정현 위원님하고.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현 방통위 그리고 방심위 구조 모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

은 아마 다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만을 고치는 것과 새로운 시대 맞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약간 혼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고민수 교수님!

○진술인 고민수 예.

○이해민 위원 교수님께서 아까 유럽 이야기 하시면서 방송과 통신을 나누는 부분에 대한 무리 말씀을 하셨어요.

○진술인 고민수 예.

○이해민 위원 저는 미디어라는 눈으로 보면 사실 그 앵글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적화 측면에서. 그런데 이게 복잡도가 좀 높습니다. 특히 통신 분야인데요. 규제와 진흥을 합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그대로 받았을 때 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유는 과기정통부에서 현재 행하던 통신 영역은 방송통신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꽤나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방통위가 그 부분까지 전문성을 갖출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있고 있어요, 2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측면에서 통신 영역 또한 진흥책과 규제책을 방통위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건지 의견을 짧게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고민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배경은요 제 진술서에 나와 있는, 8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FCC가 이런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방송통신의 융합, 기술발달 속도 이것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이게 예전처럼 완전히 방송망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통신망과 구조적 차이 그래서 방송과 통신의 기능이 완전히 구별되던 시절에는 완전 분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통신망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통해서도 리니어 서비스, 논리니어 서비스, 시청각 비주얼 서비스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따로 떼어 놓으면 이제는 망을 가지고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해 버리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FCC 모델처럼 이것을 묶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해민 위원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고민수 예.

○이해민 위원 지금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 방통위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방송통신을 제외한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인호 교수님!

○진술인 이인호 예.

○이해민 위원 통신·OTT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와의 관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저작권 관련 문제위와의 관계 그리고 통상마찰 가능성, 사실 아까 들으면서 귀담아야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지는 부분은 법안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이

법안 진행 과정에서 풀어 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숙제로 다 인정하고 안고 길게 가는 결정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진술인 이인호 예.

○이해민 위원 그러면 김진욱 변호사님, 아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절차적 정당성은,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열리고 지금 진술인으로 나와 계시고.

문제 제기를 하셨다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제안을 하고 싶으신,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하는 것을 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실까요?

○진술인 김진욱 방송 관련된 법률 논의에 있어서 법체계적인 정합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강조되었던, 역사적으로 보면……

○이해민 위원 저희가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해결, 아까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가고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다시 고민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유료방송 케이블시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과기정통부 소관일 때도 제대로 진통 못 했다라는 비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옮기는 게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런데 지금 방통위가 규제 전문성도 부족한데 산업 진흥까지 함께 담당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연결된 부분이 오히려 규제만 더 강화가 돼 버리고 진흥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귀담아들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옮겨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은 혹시, 거기에 대한 리서치를 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인가요?

○진술인 고민수 그것은 방통위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럴까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을까요?

○진술인 박동주 제가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직접 의견을 듣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3년도에 그때 업무를 가져가면서 유명한 이야기가, 그때 SO라고 했습니다. ‘소(SO)를 누가 살리냐, 창조경제의 핵심은 SO다’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케이블은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과기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전체는 하나의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파, 종편 그리고 케이블, IPTV, PP,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뭔가 정책을 구현해야 되는데 하나의 부분만 가지고 진흥정책을 한다 해서 그게 잘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방통위로 이관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생태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진술인 박동주 그래서 저희들은 규제…… 지금 법안에는 유료방송 규제뿐만이 아니라 진흥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목에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는 사실은 13년 전 최시중 위원장 있을 때, 구 방통위 때는 전체 한 곳에서 다 했던 업무입니다.

○**이해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노종면 위원이…… ‘방통위가 유료방송을 가져온다’ 이 말 사실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과기부 쪽에 있던 유료방송 규제하던 인력이 이게 합쳐지게 되는 것 이기 때문에 인력의 재편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같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 그런 법안들도 다 같이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진욱 변호사님께 질문했는데 기회를 못 드렸잖아요.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본인이 정한 두 가지…… 두 가지라고 정하지 말고 뭐가 있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지요?

○**진술인 김진욱** 방송 미디어 관련된 법률 논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적 공감대라는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게 방통위 자체도 합의제 규제기관이었고 합의제 기관을 규율하는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법률안에 대한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청회에 여러 진술인도 나왔지만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입장들이 다 다르고요.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두 가지 절차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다음에 또 하나, 이해민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러면 유료방송 사업자는 어떤 입장이냐’ 그것은 진술인들께 여쭤볼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얘기한 딱 하나는 규제 일원화였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강명일 위원장님 그리고 진술인분들, 제가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드려 볼 텐데 한번 들어 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 5인 구성인 합의제기구지요, 지금의 방통위가. 지금은 위원장 1인만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2인 체제였다라는 것이지요. 합의제 의결기구가 2인만으로 주요 의제들을 의결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지금 왜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는가, 이것을 근원을 찾아가 보면 전직 대통령이 국회 추천 봉 상임위원 1인을 수개월간 임명 지연한 것 그리고 국회가 국회 봉 상임위원 3인 추천을 2년 가까이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봉 상임위원—그러니까 부위원장이지요—이 부위원장은 3개월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상임위원 구성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판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에 와서도 왜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법을 제정해서 현 방통위를 없애 버리고 근본적으로 다르지도 않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 방통위에 위원을 임명하더라도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되지 않는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행정기관 공무원을 해임하려는 그런 저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인호 교수님, 이것 행정권·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이인호 예,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박충권 위원 결국 방송장악의 교두보로서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의도인 겁니다. 이것을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라고 국민을 우롱하는데 국민 중 누가, 이러한 입법 행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방송을 돌려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추천되는 위원 중에 국민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리고 국민이 추천권을 갖기라도 합니까?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을 해치우겠다고 입법에 손대는 것 이게 21세기 선진 자유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입법권을 장악하더니 수십 건의 탄핵안과 특검법을 자판기 두드리듯 발의하고 국가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전직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 만들고 코너에 몰아서…… 코너에 몰리면 쥐도 문다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수단까지 쓰게 만들어서 탄핵하더니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했습니다. 입법·행정부까지 장악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사법권까지 독차지하겠다고 특별재판부까지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합니다.

지금이 무슨 자리산에서 빨치산이 창궐하고 전직 대통령 잔존세력이 군에 남아서 쿠데타라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전시, 내전 상황에 해당하는 시국이기라도 한 겁니까?

또 수사·기소권 분리를 운운하면서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수사·기소권 다 갖고 있는 특검들과 공수처는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고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유일한 야당이나 다름없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고 무도한 특검의 칼날을 들이대고 여당 대표는 잠꼬대하듯이 매일같이 야당을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겁니까?

어느 한 문화평론가가 말했습니다, ‘권력은 술처럼 취하게 만든다. 취할수록 더 마시는 권력도 커지면 커질수록 더 취하게 만든다. 천박한 권력일수록 그 힘자랑을 못 참는다’. 하지만 권력을 모두 움켜쥐려는 자는 반드시 그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제발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위원장 최민희 뭐하십니까?

○박충권 위원 역천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인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주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합의제 독립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교수님의 입장은 새로 규정되는, 신설되는 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권한 밖에 있는 추천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치적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이인호 그렇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것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술인 이인호** 지금도 사실은 임명된 위원이 정파적 위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지명하고 그것도 국회가 또 나눠서 각 당이 지명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물론 형식을 거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렇게 임명된 분은 특정 정파가 지명했기 때문에 그 정파의 뜻에 따라서, 또 그런 분들을 고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오늘날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정파적으로 망쳐놓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제도적 원인입니다. 그것은 정치권이 오히려 만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현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도 정치권이 개입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것인데 새로 지금 올라온 제정법 또한 그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이인호** 그렇습니다.

○**박충권 위원** 이 공청회를 왜 해야 됩니까, 이런 똑같은 걸 만들면서?

이진숙 위원장 하나 해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입법권을 휘둘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해임 권한이 없는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 해임하겠다고 지금 이런 법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자기, 자기’ 하십니까?

○**박충권 위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세상에 자기는 각자 1명밖에 없잖아요.

○**김장겸 위원** 시정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청회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해도……

아까 이주희 위원님하고 이인호 교수님이 나눈 얘기는 매우 본질적이고 토론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인호 교수님께 좀 더 묻고 싶은 게 많이 있고 그게 또 사실, 헌법 간에 상충되는 부분도 일부 있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 것으로 집중해주시고요.

노종면 위원님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자꾸 민주당 위원님들을 그렇게 ‘자기, 자기’ 하니까 신상발언 나오잖아요.

○**김장겸 위원** 신상발언을 줄 일이 있어요?

○**위원장 최민희** 아까…… 이제 들어 보세요.

저도 모욕을 느꼈지만 위원장이라 참는데요.

○**노종면 위원**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신상발언 주세요.

○**노종면 위원** 주의·주장이 다른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박충권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욕을 느낀 부분은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돼서 현직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 내내 마음 졸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이 과정이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에 그 당시의 무

도한 권력에 의해서 노상원 수첩대로 수거되지는 않을까, 가족과 떨어지지는 않을까. 저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고민 이전에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제 안위와 가족의 안위,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윤석열이라는 자의 비상계엄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여러 가지 저항들, 뒤집기 시도 이런 것을 단 한 순간도, 진짜 눈곱만큼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선 발언에는 ‘민주당이 전임 대통령 윤석열을 몰아세워서 식물대통령을 만들고’라는 전제를 하는 이 부분부터, 다수당이 국회에서 때로는 입법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탄핵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걸 마음에 만들면 다 거부했던 그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이라고 하는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 지점부터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무도한 권력자에 맞섰던 우리들을 쥐를 궁지에 몰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궁지에 몰린 쥐가 물 듯이 계엄을 한 것처럼 두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어진 발언들은 다 우리 헌법질서를 부인하는 듯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줬어요. 탄핵을 했다, 탄핵소추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쥐를 궁지에 몰아서 물게 한 다음에 탄핵했다는 식으로 그렇게밖에 해석 안 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 저는 본인이 비상계엄을 두둔한 것이 아니고 탄핵 절차를 무시한 것, 부인한 것이 아님을 국회의원이시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의 과정을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거는 이 자리가 아닌 과방위 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에게도 유리한 제도다. 저는 그 말이 오늘 이 공청회에서도 딱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 모 위원이 국보위 얘기를 하던데 국보위가 어떤 건지 사진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면)

12·12 쿠데타 후 아까 국보위 운운한 사람과 특별관계가 있는 저 사람, 저 사진입니다. 저는 연좌제를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국가권력의 사적 남용과 악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대한민국의 현정체제를 붕괴시킨 12·12 쿠데타, 그 이후에 일어난 게 5·18이 있었고 80년 언론 통폐합 있었고 수많은 언론인들을 직장에서 강제 해직시키고 언론인들의 자유를 붕괴시킨 것이 저 쿠데타 세력인데, 아까 박충권 위원이 21세기 선진 자유 대한민국 얘기하던데 선진 자유 대한민국에서 작년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어요, 내란이.

그 내란은 포고령에 언론사, 방송사는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돼 있고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내렸고 방통위에다가는 계엄사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하루 속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로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국민의힘 위원 두어 명이 얘기한 지금 국보위와 같은 방식으로 독재를 하고 있다

면 또 어떤 특정 교수가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대통령 고유의,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다. 비상대권이다’라는 말이 용인이 되고 맞다면 우리는 그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활용하면 됩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밑자락 깔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부여를 해서 감옥에 넣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에 부여된 대한민국의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모든 지루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노종면 위원 저분 누구예요?

○김우영 위원 학습을 좀 해 보십시오.

강명일 노조위원장님, 언론의 자유가 특히나 유튜브와 같은 그런 분야에서는 국가가 심의 규정으로 제재하는 것이 자유를 신장시키는 거에 저해가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강명일 예.

○김우영 위원 가짜뉴스가 주로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이 나와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의 폐해를 언급하고 방심위로 하여금 가짜뉴스 신속대응팀 구성해서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해 가지고 소위 그들이 생각하는 가짜뉴스를 심의·제재한 바가 있는데 그 건은 정당한 행위였나요?

○진술인 강명일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 지금 강명일 위원장님도 언론인이신 거지요?

○진술인 강명일 예.

○김우영 위원 최근에 전 세계적인 현상, 탈진실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짜뉴스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범람을 하고 그 전파력이나 전염력은 팩트보다 6배 이상 강한 것이 가짜뉴스예요.

○진술인 강명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4·10 선거부정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강명일 선거부정론이요?

○위원장 최민희 부정선거론.

○진술인 강명일 부정선거론, 부정선거……

○김우영 위원 그 주장을 노조에서 하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진술인 강명일 부정선거론을 저희가 했다고요?

○김우영 위원 예.

○진술인 강명일 부정선거의 정황을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 혹은 조사기관 차원에서 팩트를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김우영 위원 그때 사내 계시판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은 선관위의 더 많은 부정선거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성명을 냈다가 삭제한 적 있지요?

○진술인 강명일 그것은 내용이 SBS에서 그 전날 보도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 보도를 소개를 하는 차원이었는데 노동조합 내부의 의견도 그거는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팩트 여부에 대해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

이 들어서 그 판단에 따라서 바로 내렸습니다.

○**김우영 위원** 아무튼 가짜뉴스, 특히 특정한 극우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읊해하고 왜곡해서 마치 극단의 왕국인 것처럼 대한민국을 몰고 가고 그럼으로써 대통령이라는 자가 오판해서 심대한 내란행위를 저지르는 그 밑자락을 깔게 한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호 교수님, ‘대통령의 비상대권, 고유의 정치적 통치행위로서 계엄은 정당하다’ 그 주장을 하신 바가 있으시지요?

○**진술인 이인호** 예.

○**김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란 세력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현재의 판시 내용도 사실상 국헌을 문란시킨 행위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통성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독재라고 비난하는 행위를 우리는 심각한 또 다른 내란행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계엄군 투입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둬도 그게 고도의 비상대권 정책입니까?

○**진술인 이인호** 위원장님, 이 논쟁에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김우영 위원** 하기 쉽으면 하지 마십시오.

○**진술인 이인호**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안전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이것은 정말 저희 법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하신 것까지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진술인 강명일** 위원장님, 잠깐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요?

○**위원장 최민희** 공술인이 신상발언 하는 일은 없어요.

○**진술인 강명일**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물으셨잖아요, 제가 노동조합 성명을 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실 이번 공청회의 취지랑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 하신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거지요?

○**진술인 강명일** 그것 플러스 좀 더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 관련돼서 심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유튜브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김현 간사님 질의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강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혹시 공술인들 중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꼭 의견을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 간사님.

○김현 위원 방통위 설치연혁 PPT부터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를 보면 2000년대에 방통위가 출범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해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가 의결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입법권입니다.

앞서 진술인 중 일부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처리한 이 절차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레닌 독재에 비유하는 그 발언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설치된 법률에 따라서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연합뉴스TV를 출범시켰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오늘 이 법이 왜 방송통신위원회로 한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방송 케이블, IPTV, 유선방송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것을 신설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유료방송사업자를 느닷없이 박근혜정부로 가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마땅하지만 당시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 없는, 인수위가 없는 정부였고 국회 구조가 이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디어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와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팩트체크넷,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 기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과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논의를 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3년도 4월 17일부터 2024년 3월 3일까지 국무총리 산하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미디어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방통위에서도 논의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왜? 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로 들어섰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과행적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기부는 방송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독임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방송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다라는 점을 깊이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최민희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개정법을 냈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현행법 폐지 후에 제정법을 7월 28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현행법을 폐지하고 제정법으로 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송 분야의 상당 영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제정하는 거고요. 위원회 구성도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상임위원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상임 전문위원 4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을 하지만 OTT를 왜 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분야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3단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성격에 맞추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지 정부가 다른

쪽에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의견이 맞지 않다고 독재 운운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행정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지만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위원장의 민주적 통제가 없었던 점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노골화 됐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인사청문회 대상과 탄핵소추가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법을 바꾸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서 뒷부분에 가면,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맨 마지막,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9쪽으로 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

지금까지 진행된 법 제정 논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법이 있었고 저희가 7월 24일 날 방통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1차 가졌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방안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8월 27일 날 다루었고 이 자리에 국민의힘은 보이콧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있고 2차 법안소위가 있을 것이고 전체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정 논의와 경과 및 진행 상황은 2013년부터 12년 동안 이 문제가 논의가 돼 왔고 촉발된 지점은 바로 이진숙입니다. 이것을 정무직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돼서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5인 구조라면, 5인이 임기가 종료되고 국가공무원들의 임기는 유지되는 것으로 지난 2006년도에 있었던 방송위원회에서 방통위 설치법으로 전환할 때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법이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정파적 발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인호 교수님께서 충분히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1소위에서 있었던 것 또한 전달 받으셨습니까?

○진술인 이인호 예, 봤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시청각……

○진술인 이인호 소위 회의록을 봤습니다.

○김현 위원 소위 회의록에 있었다면 그 법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활발하게 개진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이미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폐기가 된 것이고 새로운 제정법으로 대안 입법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인 이인호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지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 1소위의 속기록을 보셨다면 그 내용이……

○진술인 이인호 아니, 속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니어서……

○김현 위원 아니지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술인을 모셔 온 쪽에서 최민희 의원 법과 제 법을, 두 가지만 아마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술인 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제한된 설명이 갔기 때문에 오늘같이 진술인의 그런 내용이 바뀌어진, 변경된 내용이 포함이 안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 위원장으로서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상호 간에 혹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비판들이 오갔고 그리고 뭔가 행정실이 제대로 전술인들에게 자료 제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유돼야 될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 보니……

예를 들면 방심위가 민간기구라는 규정까지 나오는데 국가기구기 때문에 독립적 형식을 띠고 있는 것까지 여기서 논쟁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공청회가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드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긴 역사가 있는 논의여서 사실은 저처럼 방송위원회 부위원장하면서 방통위 설치법 만들고 그 이전에 2000년에 민언련 사무총장하면서 사무…… 하여튼 민언련 활동 계속하면서 2000년에 통합방송법 논의하고 방통위 설치법도 방송위 부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해서 만들고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일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한 흐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잘 아실까……

고민수 교수님, 방송위원회도 좀 아시지요?

○진술인 고민수 근무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사실확인 하겠습니다.

2000년에 통합방송법이 통과되고, 그때는 사실 위헌 논란은 없었고요 KBS 사장이 핫이슈였어요. 그런데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에 박권상 사장이 재임하지요. 다시 뽑힙니다. 그만두셨다가 다시 뽑혀요.

그리고 2008년에 방통위 설치법 만들었을 때도…… 제가 지금 왜 자꾸 이것을 이진숙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나 했더니 정말 과정을 이해 못하시는 건데요. 2008년 2월 달에 방통위 설치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과거의 방통위는 해산됩니다. 방통위 해산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이었는데 임기 1년 반 남겨 놓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설치돼요. 그랬을 때 저를 민주당 쪽에서 다시 방통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가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진숙 위원장도 일단 사임하고 새로운 체제에서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하실 수 있는 길이 막힌 건 아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것 급하다고 말씀하시는 저 2012년에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요, 인수위가 끝나고 바로 방통위 설치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때 미창부가 생겨서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방통위를 재구조화하거든요. 그때 유료방송이 미창부로 가요. 그런데 하나마나 한 게 됐지요, 결과적으로 좋아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2008년에 방통위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consensus)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그 과제가 22대 국회에 떨어졌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끝나고 방통위 설치법 저희에게 주셨을 때 그때 문방위가 여야 15 대 15였어요. 저희가 정파적으로 반대하면 못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새 정부가 떴고 정부조직 개편을 하고 그리고 바꾼다니 이것은 새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협조해서 미창부가 뜬 거지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히 제가 낸 법은 저로서는 13년 만에 정상화 법안을 낸 거라서 제가 좀 더 설득을 했어야 했나 이런 반성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13년 논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는 새 정부가 뜨고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적어도 방송장악이 없는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제 그 조직으로는 안 되니 새롭게 해쳐 모여 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만…… 방통위 직원들이 저와 일할 때 매우 유능한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장악 되는 과정에서 힘들어서 다들 소극적으로 있었는데요. 저와 FTA 방송 개방 막을 때 머리 맞댔던 그 직원들 다 그대로 있고요. 또 과기부에 가 있는 일부 방송위 출신 직원들도 매우 유능했고 정통부 직원들도 유능해서, 저는 그 사람의 사회적 존재 형태가 의식을 결정하고 조직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것 그것을 믿고 새롭게 방송통신 쪽의 기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인호 교수님, 제가 얘기는 잘 알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 방송위원회, 2008년 방통위원회가 다 위헌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술인 이인호 예, 위헌성이 짙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은 계속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면 위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법이 작동하고 있는데 계속 위헌이라고 주장하실 경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진술인 이인호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새로운 조직을 만드신다고 하시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예.

○진술인 이인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새로운 조직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것은……

○진술인 이인호 권한 범위가 좀 확장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 방식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그게 아까 박동주 국장 얘기를, 제가 저 말을 몇 분이 구체적으로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일할 수 있는 실행 조직개편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 조직을 위원회만 봐서 그래요, 위원회만. 위원회 보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들어가면 다 정무직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실행 조직 재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어서 그거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정부만 보면 안 되고 누구에게 서비스 하냐를 봐야 되는데 2000만 명에게 봉사하는 정부조직이 다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를 확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인호 교수님께,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것은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에요. 뽑았잖아요.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게 국회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의 일부를 추천이라는 형태로 나누어도 그것이 헌법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우리 사회가 인정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면 그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으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일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모순이 발생한 건 윤석열 피고인의 국정 철학이 다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다른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의 국정 철학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속 정무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다 반대하는 사람인데…… 완전 반대한다고 밝혔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임기를 보장하라는 것은 교수님의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과는 배치되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인호** 대통령이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해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이 입증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요. 그것을 국회가 승인하는 형태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관여해야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조직을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만들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최민희** 그것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라는 게, 제가 아까 본질적인 질문을 드린 것이 어느 정부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창부가 뜨면서 이제 청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였는데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다, 임기가 남았음에도.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조작된 사건으로 보는데, 검경을 동원해서 쫓아내고 단지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해직해서 지금 재판이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매한 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재판을 질질 끈다는 건. 그러면 그런 식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게 결정적 사유인가.

또 하나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 중의 하나는 국정 철학이 다르다는 것은 해임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사임해야 될 결정적인 사유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인호**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짧게 답변하시고 이에 대해서……

○**진술인 이인호**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정무직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은 대통령도 중대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이상은 해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독립기관이 아닌……

○**위원장 최민희** 독립기관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 독립기관 아니에요.

○**진술인 이인호** 예?

○**위원장 최민희** 대통령 소속기관이에요,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

○진술인 이인호 아니, 그러나 방송법에서 기관의 독립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뭔지는 아시지요? 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라는 건데……

○진술인 이인호 예, 그 점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장악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술인 이인호 그것은 제가 평가할 사안은 아니고……

○위원장 최민희 새 정부는 방송을 독립시키겠다는 거고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건데 방송장악에 앞장섰던 사람이 지키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인 물음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장악에 열심히 싸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어요, 누가 임명했건 최소한 앞장서지는 않는.

○진술인 이인호 저는 어느 정권이든 방송장악을 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봅니다.

○김현 위원 짧게 하나만 좀 질문……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 짧게 하세요.

○김현 위원 지금 법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시나요?

○진술인 이인호 존중하지요,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개정법도 낼 수 있고 제정법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진술인 이인호 예.

○김현 위원 그런데 제정법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법에 하자가 있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결론이 나왔지요?

○진술인 이인호 제가 언제 충분히 안 봤다 그랬……

○김현 위원 아니, 아까 법을 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진술인 이인호 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은 제가 정확히 다 읽었습니다.

○김현 위원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대안 법을 발의하잖아요.

○진술인 이인호 그 부분은 어디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어디에도 올라온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충분히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저희가 죽 오랜 과정을 통해서 법안을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공청회 끝나고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탄핵을 하는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개편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이.

○진술인 이인호 예.

○김현 위원 그리고 7명에 대한 것도 조직개편입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개편입니다. 또 하나가 과학기술정보, 독임제에 있는 기구 35명의 공무원이 합의제기구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개편이 네 분야에서 다섯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폐기하고 제정법을 내는 것이 부당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점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진술인 이인호 아니, 위원님……

○김현 위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법안 토론회도 하고 할 텐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목과 개편의 범위가 별것이 없는데 특정인을 축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에 동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통위가 그동안 벌여 왔던 그러니까 1기서부터 5기까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편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있었지 방송사를 폐지하고 또 방송사를 장악하고 언론인들이 탄압받는데 제 역할을 하나도 못 한 방통위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통위가 쓸모없다, 폐지돼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도 있다는 점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강명구 진술인이 아까 유튜브 관련하여……

○진술인 강명일 강명일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죄송합니다.

유튜브 관련하여 진술할 게 있다고 했었어요. 말씀하세요.

○진술인 강명일 지금 방송은 전파가 회소하고 그것을 국가가 특정기간 사용 허가권을 줘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규제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무제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채널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유튜브야말로 국민 개개인의 자신의 정치적 의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당히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어야 된다 하는 게 미국의 법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매체의 속성에 따라서 규제나 심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제재하고 이 사람을 처벌하고 혹은 과징금을 매기고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상당히 낯설고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법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고 피어 모니터링(peer monitoring)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자체하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 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진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허위사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라고 보지 않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우병 판례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을 잡기 위해서 외양간 전체를 허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표현행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그런 규제를 신설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든지 현안질의 때 민주파출소에서 고발했던 사안에 대해서 구글코리아 분을 모셔 갖고 이 부분들을, 왜 가짜뉴스 심의를 하지 않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국민이 보기에는 국가가 특정 기업을 상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강화하라 하는 부분들도 사실 보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진술인, 앞부분까지만 듣겠습니다. 뒷부분은, 거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류희림 위원장이 구글 가서 가짜뉴스 삭제하라고 하고 그것 과도하다 그럴 수 있으니까……

○진술인 강명일 그런 부분들도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앞부분, 그러니까 유튜브는……

○김현 위원 정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뒷부분…… 평가를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유튜브 규제는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신중하라 이 말씀이지요, 요약하자면?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 규제 안 들어가요.

최형두 간사님, 3분.

고민수 진술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것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최형두 위원 먼저 하라 하세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먼저 의견 말씀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진술인 고민수 특별한 사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건데 헌법학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저희가 똑같은 헌법을 놓고도 해석하는 관점과 견해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규범주의 헌법관이라고 불리우는 관점도 있고요 결단주의적 관점도 있고요 통합과정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부르는 관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주의적 관점이나 기능적 관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합헌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각에서, 이게 위헌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위헌이다라고까지 확장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예민해 하시는 것 같아서 헌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3분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의 새로운 재편 여기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대한 해석도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위헌적 소지와 쟁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왜 케데현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기뻐하고 이 케데현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렸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나라가 대박 터뜨리고 우리나라는 절망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굳이 비유하자면 케데현 서프라이즈인 줄 알았더니 케데현 디스페어로 돌아온 이 참담한 현실 이것이 우리가 방송미디어통신산업에 대한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뭔가 국회가 잘못한 것 아니냐, 소홀한 것 아니냐를 되돌아 보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는 규제 얹어 놓고 또 하나 권한 조정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 우리 지상파방송들이 뮤직뱅크부터 해서 블랙핑크니 뭐니 모든 글로벌 확산에 썩을 틔운 주역들인데 방송사의 수익은 갈수록 떨어지고 왜 엉뚱한 OTT들이 떼돈을 버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김진욱 교수님 글에도 나오는데 방송미디어통신산업 진흥과 글로벌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장악 문제만 하더라도 역대 정권에서 다 있었지요. 있었고, 저도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장악을 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MBC 방문진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옛날의 어느 정부처럼 이사들을 몰아내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새로 선임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도 지적했듯이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했던 것이 논란을 낳고 법원에서 형식상의 이 5인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2인 체제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되고 이런 사례였습니다. 이것 자체도 불행한 일인데……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업무 조정과 또 미디어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매우 복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인들 의견도 큰 도움이 되었고 여야 위원님들께 차제에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 차원의 좁은 논의 또 언제 까지 이것을 끝내야겠다라는 일정에 쫓기지 말고 한 내년까지 시간을 두고서 여러 개 부처, 여러 개 국회의 업무가 조정되는 만큼, 이번에 캐데현 서프라이즈가 정말 캐데현의 대박으로 대한민국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송사들이 더 이상 우물 안 정파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글로벌에서 큰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어떻게 그것을 지원할 것인가, 인터넷과 또 우리 OTT는 진행할 것인가 콘텐츠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논의로 정말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주희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진술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진술서들 제가 좀 검토하면서 오늘도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결국에 우리 방송과 통신 미디어를 다루는 그 기관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해 가자는 그런 취지는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 나갈 것이냐, 그 조직에 대해서 이런 고민하에 계속 이 기구의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앞서 많은 말씀 나왔듯이 그 논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축적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정도를 축소시켜야 한다, 만약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모두 다 임명 또는 지명을 하고 국회의 어떤 개입 정도를 좀 낮추게 되면 그러면 그 독립성과 중립성이 증가할 것이냐?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위원회 명칭에 붙은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한번 또 찾아보니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도 제5조 1항과 2항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이렇게 해서 국회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인 입법기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진술서, 아까 고민수 진술인께서, 법학 교수님께서 결국에 기구 구성의 문제인데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이것의 헌법적 당위성의 논거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상당히 현재 우리가 민주적으로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수 진술인의 추가적인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말씀하십시오.

○진술인 고민수 제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필요성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송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참 오래됐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써 가지고 한국행정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슨 이런 독립행정위원회제도,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갖고 끄집어 오느냐 그랬는데 그 때는 지금 우리가 법안으로 다루고 있고 현행법, 과거에 만들어진 법 다 비교해 보면 그 때 제가 제안한 것은 더 센 거였습니다. 완전 미국의 FCC 모델을 저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자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미국 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력한 삼권분립 국가를 실현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제 정부의 형태를 두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합의제 독립기구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FCC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행정위원회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도 위원들은 다 의회가 정합니다. 대통령은 임명행위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 논란이, 서로 다른 의견이 지금 상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 형태에도 반하지 않고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침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주장의 논거로 들었던 게 이른바 행정조직법상의 소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권한을 건드리지 않고 그 일부만 남겨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골라서 그 사람을 임명하는 행위까지를 전체 인사권으로 봐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자기는 임명행위만 해도 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행정법에서의 개념을 발견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헌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FCC 사례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결코 우려점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또 다른 의견을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는 이 논의를 너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저에게 매우 매우 오래된 논의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는 전대미문의 방송장악으로 폐폐해진 방송통신 환경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1단계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 1단계 과제의 일환으로 방송 3법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까지 1단계 작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2년 박근혜정부가 인수위 후 바로 미창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을 때 민주당은 내용적으로 반대했으나 새 정부에 협조한다는 의미로 그 법을 같이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미디어 쪽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도 새 정부에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이 방송장악으로 더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단지 조직개편

이나 제도 조정으로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 속에서 방송통신산업이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2단계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미디어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통합미디어통신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근간은 수평적 규제체계의 확립입니다. 2단계 논의 때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방위는 새 정부가 들어서 방송장악의 잔재를 일소하고 우선 방송인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고 국민께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사실상 돌려주는 이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송통신기구 그리고 공영방송을 위하여 그리고 산업 경쟁력이 있는 미디어 환경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 등 오늘 있었던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의 정책 방향과 관련 법안을 논의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위하여 배석하신 과기정통부, 방통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우영 김장겸 김현 노종면 박정훈 박충권 이상휘 이주희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첨가 위원(3인)

이정현 정동영 최수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출석 진술인

고민수(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강명일(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김진욱(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7)

9월 1일 회부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8)

이상 3건 9월 2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3)

이상 3건 9월 3일 회부됨